##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2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모경종·김병기·정청래

김준혁 • 주철현 • 남인순

황명선ㆍ김 윤ㆍ김동아

이기헌 • 박민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도로의 보도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정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주·정차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5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항 중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및 제55조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람"으로 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
	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
	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	
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	
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	
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 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 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및
제55조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160조(과태료) ①
<u>.</u>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
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
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② ~ ④ (현행과 같음)